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 공식 규정집

제정일: 2026.03.02.

개정일: 2026.04.02.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 공식 규정집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편 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정의

제2장 규정의 효력 및 해석

- 제4조 규정의 효력
- 제5조 규정의 우선순위
- 제6조 유권해석 권한
- 제7조 미규정 사항의 처리

제2편 코스 및 시설 규정

제3장 코스 형상 및 시설물 규정

- 제8조 프로파크골프 코스 기준 및 공인
- 제9조 코스 레이아웃 및 구성
- 제10조 홀 길이 및 기준타수 설정
- 제11조 코스 내 시설물 및 장애물

제4장 티·그린·컵 규정

- 제12조 티잉 구역 기준
- 제13조 그린 및 잔디 관리 기준
- 제14조 홀 컵 및 깃대 규격

제5장 안전 및 시설 관리

- 제15조 안전 시설 및 이격 거리
- 제16조 갤러리 및 미디어 인프라
- 제17조 용구 사용 및 현장 지도

제3편 경기 규정 (Rules of Play)

제6장 경기 방식

- 제18조 경기 방식의 종류
- 제19조 스트로크 플레이
- 제20조 순위 결정

제7장 라운드 및 홀 운영

- 제21조 라운드 구성
- 제22조 경기 속도 및 시간

- 제23조 출발 방식
- 제24조 경기 중단 및 재개

제8장 티샷 및 플레이

- 제25조 티잉 구역에서의 플레이
- 제26조 스트로크의 정의 및 부정 스트로크
- 제27조 플레이 순서

제9장 볼의 상태 및 플레이 위치

- 제28조 볼의 식별 및 마크
- 제29조 볼의 리플레이스
- 제30조 분실구 처리

제10장 OB·해저드 및 장애물

- 제31조 아웃 오브 바운즈(OB)
- 제32조 해저드 및 장애물의 정의
- 제33조 언플레이어블 선언 및 구제 대상
- 제34조 수리지 및 인공 장애물에 대한 구제
- 제35조 구제 절차 및 벌타의 적용

제11장 벌타 및 스코어카드

- 제36조 벌타의 기본 원칙
- 제37조 일반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벌타
- 제38조 중대 위반 및 실격 사유
- 제39조 벌타 적용의 판단 권한
- 제40조 스코어카드 작성 및 마커의 책임
- 제41조 스코어카드 제출 및 확정

제4편 프로선수 관리 규정

제12장 선수 등록 및 자격

- 제42조 선수 등록의 원칙
- 제43조 프로 선수 자격 요건
- 제44조 선수 등록 절차 및 의무
- 제45조 자격의 유지 및 등록 유효기간
- 제46조 등록 제한 및 자격 박탈
- 제47조 미등록 및 무자격 선수의 제재
- 제48조 국제선수 및 특별 등록
- 제49조 글로벌 라이선스의 시범 운영

제13장 선수의 권리와 의무

- 제50조 선수의 지위

- 제51조 선수의 권리
- 제52조 초상권·중계권 및 마케팅 권리
- 제53조 선수의 일반적 의무
- 제54조 품위 유지 및 스포츠맨십
- 제55조 대회 참여 및 교육 이수 의무
- 제56조 선수의 책임 및 제재

제14장 복장 및 용구 사용 규정

- 제57조 목적
- 제58조 복장 규정의 기본 원칙
- 제59조 경기 복장의 기준
- 제60조 유니폼·비브 및 로고
- 제61조 용구 사용의 기본 원칙
- 제62조 공인구 사용 의무
- 제63조 클럽 및 기타 용구
- 제64조 용구 검사 및 확인
- 제65조 위반 시 조치

제15장 선수 행동 및 윤리강령

- 제66조 선수의 기본 윤리
- 제67조 경기 중 행동 규범
- 제68조 비신사적 행위의 금지
- 제69조 부정행위 및 이해충돌 금지
- 제70조 대외 활동 및 SNS 윤리
- 제71조 징계규정과의 연계
- 제72조 윤리 교육 의무

제5편 경기위원회 및 경기 운영 규정

제16장 경기위원회 운영

- 제73조 경기위원회의 설치
- 제74조 경기위원회의 구성
- 제75조 경기위원의 자격
- 제76조 경기위원의 지위와 책임
- 제77조 경기위원의 권한
- 제78조 권한의 한계
- 제79조 보고 의무

제17장 경기 운영

- 제80조 현장 운영 기준

- 제81조 경기 일정 및 진행 관리
- 제82조 현장 질서 유지
- 제83조 경기보조요원 관리

제18장 판정 및 이의제기

- 제84조 판정 절차
- 제85조 이의 신청
- 제86조 재심 절차

제6편 대회 및 리그 운영 규정

제19장 프로리그 운영

- 제87조 리그 구조
- 제88조 시즌 운영
- 제89조 시드 배정

제20장 상금 및 포인트

- 제90조 상금 배분
- 제91조 랭킹 포인트

제21장 스폰서 및 마케팅

- 제92조 유니폼 및 장비 로고
- 제93조 광고 및 홍보 기준

제7편 상벌 규정

제22장 상벌의 가치와 적용

- 제94조 상벌의 목적
- 제95조 상벌의 가치

제23장 상벌위원회

- 제96조 설치 및 구성
- 제97조 회의 및 의결
- 제98조 제척

제24장 징계 절차 및 조사권

- 제99조 징계의 대상 및 사유
- 제100조 징계에 적용될 규정 등
- 제101조 징계 정차의 개시
- 제102조 조사권
- 제103조 징계 결정 통보 및 절차적 권리 보장
- 제104조 징계의 효력 발생
- 제105조 재심 청구

- 제106조 징계의 집행

제25장 징계의 종류 및 기준

- 제107조 징계의 종류
- 제108조 징계 기준
- 제109조 징계 양정
- 제110조 활동 정지

제26장 포상

- 제111조 포상의 실시
- 제112조 포상 심의
- 제113조 포상의 종류

제8편 규정 개정 및 공청회

제27장 규정 개정

- 제114조 규정 개정 발의
- 제115조 공청회

제28장 공포 및 시행

- 제116조 규정 공포
- 제117조 시행일의 지정

부칙

제1편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프로파크골프 경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선수·경기위원·관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프로파크골프 리그의 질서 확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 또는 승인하여 운영하는 모든 프로파크골프 리그 및 투어, 공식 대회에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프로 선수, 경기위원, 경기 운영요원, 대회 관계자 및 협회가 인정한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한다.
-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협회가 주관하는 공식 경기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의 기본 정신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회”란, 프로파크골프의 공식 주관 단체로서 프로파크골프 리그 및 관련 제도를 총괄·운영하는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를 말한다.
2. “프로파크골프”란,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 선수 중심의 파크골프 경기 체계를 말한다.
3. “리그(League)”란, 협회가 단일 주관으로 시즌 단위로 운영하는 공식 경기 체계를 말하며, 개인전 및 향후 팀전을 포함할 수 있다.
4. “투어(Tour)”란, 리그 체계 하에서 또는 별도로 운영될 수 있는 복수의 공식 대회를 의미하며, 지역 순회 대회, 특별 대회, 국제 대회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5. “시즌(Season)”이란, 협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리그가 개막하여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대회(Tournament)”란, 리그 또는 투어의 일부로서 협회 또는 협회가 승인한 주관사가 개최하는 개별 경기를 말한다.
7. “프로 선수”란, 협회에 등록되어 프로파크골프 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8. “플레이어(선수, 경기자)”란, 협회가 정한 자격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고, 공식 리그 또는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말한다.
9. “경기위원회”란, 프로파크골프 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 해석, 판정, 경기 진행 관리, 이의 처리 및 징계 건의를 담당하는 협회의 공식 기구를 말한다.

10. “경기위원”이란, 경기위원회에 소속되어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본 규정에 따라 판단·조정·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1. “판정”이란, 경기위원이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 내리는 공식적인 결정 행위를 말한다.
12. “이의 제기”란, 선수 또는 관계자가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후 규정 해석이나 판정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코스”란, 협회가 승인한 규격과 기준에 따라 조성된 프로파크골프 경기 구역을 말한다.
14. “홀”이란, 티잉 구역부터 그린 및 홀 컵까지로 구성된 경기 단위를 말한다.
15. “벌타”란, 규정 위반 시 본 규정에 따라 선수에게 부과되는 타수 또는 제재를 말한다.
16. “징계”란, 본 규정 또는 관련 규정 위반 시 협회가 선수 또는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말한다.
17. “규정집”이란, 본 규정을 포함하여 협회가 제정·공포한 모든 공식 규정을 집대성한 문서를 말하며, 인쇄본 및 전자문서를 모두 포함한다.
18. “마커(Marker)”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의 경기에서 선수의 각 홀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경기위원회가 지명한 사람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동반 경기자를 의미한다. 마커는 각 홀 종료 후 해당 선수의 스코어를 정확히 기록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라운드 종료 후 선수와 함께 스코어카드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스코어의 최종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
19. “3-3-3 시스템”이란 9홀 기준의 프로파크골프 코스 구성 방식으로서, 파3 홀 3개, 파4 홀 3개, 파5 홀 3개로 균형 있게 설계된 구조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거리와 난이도, 전략 요소를 조합하여 경기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 표준 코스 구성 원칙으로 적용되며, 협회가 승인하는 프로 대회와 기본 코스 구성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규정의 효력 및 해석

제4조(규정의 효력)

- ① 이 규정은 협회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이 규정은 협회가 주관 또는 승인하는 모든 프로파크골프 공식 경기 및 관련 행위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③ 선수 및 관계자는 본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5조(규정의 우선순위)

- ① 프로파크골프 경기 운영에 있어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
 2. 협회가 별도로 제정한 세부 규정
 3. 대회별 특별 규정(대회 요강 및 로컬룰 포함)
- ② 대회별 특별 규정이나 로컬룰은 해당 대회 또는 해당 라운드에 한하여 한시적인 효력을 가지며, 규정의 근본적인 가치(공정성)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유권해석 권한)

- ①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권한은 협회에 있다.
- ② 경기 중 발생하는 규정 해석 및 판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위원회의 판단을 따른다.
- ③ 협회의 유권해석은 모든 선수 및 관계자를 기속한다.

제7조(미규정 사항의 처리)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프로스포츠 규정의 해석과 관행을 따른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기위원회의 판단을 우선 적용하며, 최종적으로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2편 코스 및 시설 규정

제3장 코스 형상 및 시설물 규정

제8조(프로파크골프 코스 기준 및 공인)

- ① 프로파크골프 코스는 공정한 경기 운영과 선수 안전을 확보하고, 파크골프의 본질적 가치와 국제적 표준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가 정한 공식 코스 기준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 ② 협회가 주관 또는 승인하는 프로파크골프 공식 투어 및 대회는 본 규정 및 협회가 정한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여 공인받은 코스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 ③ 프로파크골프 코스는 난이도(변별력), 전략성, 안전성 및 관람 환경(미디어 인프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④ 코스의 등급 분류(Class A, B, C), 공인 요건 및 공인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4(공인 코스 등급 및 요건)에 따른다.

제9조(코스 레이아웃 및 구성)

- ① 코스는 18홀을 기본 단위로 구성하며, 스타트 홀 인근(1~3홀)에는 경기 흐름을 고려하여 롱 홀(Par 5)을 배치하는 등 자연스러운 흐름(Flow)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인접 홀 간에는 타구 사고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치 설치가 불가능한 교차 홀 또는 마주 보는 홀의 배치는 금지한다.
- ③ 페어웨이와 러프는 경기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도그레그(Dogleg) 등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기 흐름을 저해하는 설계는 지양한다.
- ④ 코스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코스, 아웃코스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홀 길이 및 기준타수 설정)

- ① 각 홀의 길이 및 기준타수(Par)는 프로 경기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회가 정한 3-3-3 시스템 및 총 연장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홀의 길이는 티잉 구역 중심으로부터 홀 컵 중심까지의 거리 또는 페어웨이 중앙을 통과하는 실제 플레이 동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기준타수(Par)는 18홀 단위로 3타, 4타, 5타를 배분하되, 프로 투어의 난이도 확보를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보다 상향 적용할 수 있다.
- ④ 홀 길이, 총 연장 및 기준타수에 관한 세부 수치는 별표 1(프로파크골프 코스 설계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코스 내 시설물 및 장애물)

- ① 코스 내에는 벙커, 워터 해저드 등의 장애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나,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샷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벙커는 그린 진입로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선수의 시야를 과도하게 제한하도록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코스 경계(OB), 해저드 및 수리지 등은 협회 규정에 따라 명확한 색상의 말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 표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구역 표시 말뚝의 색상 및 구분 기준은 별표 3(안전 및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티·그린·컵 규정

제12조(티잉 구역 기준)

- ① 티잉 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선수의 안정적인 스탠스 확보와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면적과 평탄성을 갖추고, 지면과의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티잉 구역에는 전면 끝부분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티 마크 또는 티 라인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게 티 샷이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④ 티잉 구역의 세부 규격 및 티 마크 설치 기준은 별표 2(시설물 규격 기준)에 따른다.

제13조(그린 및 잔디 관리 기준)

- ① 그린은 불의 흐름과 정지가 일정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장거리 퍼팅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그린에는 난이도 조절을 위한 언듈레이션을 둘 수 있으나, 경기 진행이 현저히 곤란한 과도한 요철이나 형상은 피하여야 한다.
- ③ 대회 기간 중 그린, 페어웨이 및 러프의 잔디 길이는 협회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그린의 면적 및 잔디 관리 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홀 컵 및 깃대 규격)

- ① 홀 컵은 협회가 공인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지면보다 낮게 매설하여야 한다.
- ② 깃대(핀)는 바람에 의하여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수직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원거리에서도 식별 가능한 시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홀 컵 및 깃대의 세부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장 안전 및 시설 관리

제15조(안전 시설 및 이격 거리)

- ① 코스 운영자는 선수 및 갤러리의 안전을 위하여 홀 간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이격 거리가 부족하거나 타구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이격 거리 및 안전장치 설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6조(갤러리 및 미디어 인프라)

- ① 투어 코스 인증을 위하여 주요 관람 지점에는 갤러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 지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주요 홀에는 방송 중계를 위한 카메라 설치 공간 및 전력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용구 사용 및 현장 지도)

- ① 코스 내에서는 협회가 공인한 용구만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비공인 용구 사용이나 복장 위반 등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경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편 경기 규정 (Rules of Play)

제6장 경기 방식

제18조(경기 방식의 종류)

- ① 프로파크골프 공식 경기는 개인전 스트로크 플레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개인전은 대회 성격에 따라 예선과 결선으로 구분하여 리그(League) 또는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협회가 승인하는 경우 단체전(포섬, 포볼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팀전·프랜차이즈 대항전·국가대항전 등은 별도의 대회 요강 및 특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스트로크 플레이)

- ① 프로파크골프 공식 경기는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를 기본 경기 방식으로 한다.
- ② 스트로크 플레이란 정해진 홀 수(18홀 이상)를 라운드하여 각 홀에서 기록한 타수를 합산하고, 총 타수가 가장 적은 선수를 상위 순위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 ③ 모든 스트로크는 본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벌타는 해당 홀의 타수에 가산한다.

제20조(순위 결정)

- ① 경기 종료 후 동타가 발생한 경우, 순위 결정은 대회 요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결정한다.
 1. 백 카운트(Back Count) 방식
 2. 서든 데스(Sudden Death) 방식
- ② 컷오프(Cut-off) 방식이 적용되는 대회는 통과 인원, 기준 타수 및 적용 시점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라운드 및 홀 운영

제21조(라운드 구성)

- ① 프로파크골프 공식 경기의 1라운드는 18홀 플레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기상 악화, 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기위원회는 9홀 단위로 경기 축소 또는 경기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경기 속도 및 시간)

- ① 선수는 배정된 티오프(Tee-off) 시간 이전에 출발 지점에 도착하여 경기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지각 또는 반복적인 경기 지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기위원회는 경고, 벌타 또는 실격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경기위원회는 경기 흐름 관리를 위하여 슬로우 플레이(Slow Play)에 대한 세부 기준을 대회 요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발 방식)

- ① 출발은 원칙적으로 1번 홀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하는 티오프(Tee-off) 방식으로 한다.
- ② 대회 운영 효율을 위하여 전 홀 동시 출발하는 샷건(Shot-gun)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경기 중단 및 재개)

- ① 천재지변, 기상 악화, 안전사고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경기위원장은 경기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 ② 중단 신호가 발령되면 선수는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하며, 재개 신호 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
- ③ 중단된 경기는 동일한 조건에서 재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티샷 및 플레이

제25조(팅잉 구역에서의 플레이)

- ① 선수는 티잉 구역 내에 볼을 놓고 플레이하여야 한다.
- ② 스탠스는 티잉 구역 밖을 침범할 수 있으나, 볼은 반드시 티잉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③ 티샷으로 볼이 실제로 타격되어 움직였으나 티잉 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볼은 인플레이 상태로 간주한다.

제26조(스트로크의 정의 및 부정 스트로크)

- ① 스트로크(Stroke)란 클럽 헤드로 볼을 타격하여 전방으로 보내기 위한 스윙 동작의 결과로 볼이 움직인 경우를 말한다.
- ② 본 규정은 프로파크골프 종목 특성에 따라, 의도적으로 스윙하였으나 볼에 접촉하지 아니한 경우는 스트로크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③ 해당 홀에서 부정 스트로크가 발생한 경우 2벌타를 부과한다.(별표 5 참조)
- ④ 고의로 손, 발 또는 기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볼을 이동·조작하거나, 스트로크에 준하는 방식으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부정 스트로크로 간주한다.

제27조(플레이 순서)

- ① 첫 홀의 플레이 순서는 조 편성 또는 추첨에 따른다.
- ② 이후 홀에서는 직전 홀에서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먼저 플레이한다.
- ③ 두 번째 스트로크부터는 홀 컵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선수가 먼저 플레이한다.

- ④ 안전 확보 또는 경기 진행을 위하여 동반자의 동의하에 플레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장 볼의 상태 및 플레이 위치

제28조(볼의 식별 및 마크)

- ① 선수는 자신의 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 ② 플레이어가 경기에 방해가 되어 요청하는 경우, 동반 플레이어는 볼을 마크한 후 집어 올려야 한다.
- ③ 마크 없이 볼을 집어 올리거나 이동시킨 경우 2벌타를 부과한다.

제29조(볼의 리플레이스)

- ① 외부 요인에 의해 정지된 볼이 움직인 경우, 벌타 없이 원래 위치에 리플레이스한다.
- ② 바람, 경사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 볼이 움직인 경우에는 이동된 위치에서 그대로 플레이한다.

제30조(분실구 처리)

- ① 타구한 볼을 3분 이내에 찾지 못한 경우 분실구로 처리한다.
- ② 분실구로 처리된 경우 2벌타를 부과하고,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마커 확인 후 예비 볼을 플레이스 한다. 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 경기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10장 OB·해저드 및 장애물

제31조(아웃 오브 바운즈, OB)

- ① 볼이 코스 경계로 지정된 아웃 오브 바운즈(OB) 말뚝 또는 경계선을 벗어난 경우, OB로 판정한다.
- ② OB 발생 시 해당 선수에게 2벌타를 부과한다.
- ③ OB 처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OB 경계를 마지막으로 벗어난 지점에서 홀 컵과 가깝지 않은 방향으로 2클럽 이내에 볼을 플레이스한다.
 2. 대회 요강 또는 로컬룰에 따라 특설 OB 티(드롭 존)가 설치된 경우, 해당 지점에서 플레이한다.
- ④ OB의 경계 표시 및 세부 기준은 코스 규정 및 로컬룰에 따른다.

제32조(해저드 및 장애물의 정의)

- ① 해저드(Hazard)란 경기 난이도 조절을 위하여 코스 설계상 지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워터 해저드
 2. 벙커

- ② 장애물(Obstruction)이란 코스 내에 설치된 고정 또는 임시 인공 구조물으로써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말한다.
- ③ 해저드 및 장애물의 구분, 표시 방법 및 색상 기준은 코스 규정 및 로컬룰에 따른다.

제33조(언플레이어블 선언 및 처치)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스트로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수는 언플레이어블(Unplayable)을 선언할 수 있다.
 - 1. 나무 뿌리, 바위, 덩굴 등 자연 장애물로 인한 스윙 제한
 - 2. 볼의 위치로 인해 선수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 ②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경우, 해당 선수에게 2벌타를 부과한다.
- ③ 선수는 볼이 정지해 있던 지점에서 홀 컵과 가깝지 않은 방향으로 2클럽 이내에 볼을 플레이스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제34조(수리지 및 인공 장애물에 대한 구제)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선수는 벌타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1. 수리지(Ground Under Repair)에 볼이 위치하거나 스탠스 또는 스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배수구, 보호용 시설, 방송 장비 등 움직일 수 없는 인공 장애물에 볼이 위치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 ② 구제 지점은 해당 장애물을 피하여 가장 가까운 완전 구제 지점(Nearest Point of Relief)에서 2클럽 이내로 한다.<개정 2026.04.02>
- ③ 무벌타 구제 시에도 홀 컵과 가깝지 않은 방향으로만 공을 플레이스 해야 한다.

제35조(구제 절차 및 벌타의 적용)

- ① 본 장에서 규정한 구제 절차는 경기의 공정성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② 구제 절차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규정을 악용한 경우, 경기위원회는 2벌타 또는 실격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본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해저드·장애물 관련 사항은 경기위원회의 판단 또는 로컬룰에 따른다.

제11장 벌타 및 스코어카드 기록

제36조(벌타의 기본 원칙)

- ① 프로파크골프 경기에서 벌타는 경기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부과한다.
- ②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벌타는 2벌타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벌타는 해당 홀의 스코어에 가산하며, 벌타가 부과된 사실은 반드시 스코어카드에 명

시되어야 한다.

제37조(일반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벌타)

-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일반적인 규정 위반으로 보며, 2벌타를 부과한다.
 1. 티잉 구역 규정 위반
 2. 마크 없이 볼을 집어 올리거나 이동한 경우
 3. 오구(Wrong Ball) 플레이
 4. 부정 스트로크(밀어내기, 퍼 올리기, 끌어 당기기 등)
 5. 기타 상황별 경기규칙 중 벌타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동일 라운드 내 반복 위반 시 경기위원회는 추가 벌타 또는 중대 위반으로 상향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중대 위반 및 실격 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중대 위반으로 간주한다.
 1. 고의적인 타수 조작
 2. 스코어카드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
 3. 경기위원회의 지시 불이행
 4. 폭언, 폭행, 기물 파손 등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행위
- ② 중대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경기위원회는 실격(즉시, 경기 후)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39조(벌타 적용의 판단 권한)

- ① 벌타 부과 및 위반 여부 판단은 경기위원회에 있다.
- ② 현장에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경기위원회는 비디오 자료, 동반 선수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후 판정할 수 있다.
- ③ 경기위원회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이의 제기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제40조(스코어카드 작성 및 마커의 책임)

- ① 스코어카드는 협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며, 전자스코어 시스템을 공식 기록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마커는 동반 선수의 타수를 정확히 기록할 책임이 있으며, 각 홀 종료 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마커는 선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전자스코어 우선 원칙: 전자스코어 시스템이 도입된 대회에서는 전자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우선한다. 단, 시스템 오류나 기록 불일치 발생 시 경기위원회가 종이 스코어카드, 전자로그, 영상 판독, 동반자 진술을 종합하여 최종 기록을 직권으로 확정한다.

제41조(스코어카드 제출 및 확정)

- ① 선수는 라운드 종료 후 스코어카드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경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실제 타수보다 적게 기록된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 ③ 실제 타수보다 많게 기록된 경우에는 제출된 스코어를 인정한다.
- ④ 경기위원회가 공식 결과를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기 결과는 확정된다.
- ⑤ 공식 결과 발표 전이라도, 명백한 기록 오류가 확인된 경우 경기위원회는 전자 로그·서명 카드·영상 등 객관 자료에 따라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4편 프로선수 관리 규정

제12장 선수 등록 및 자격

제42조(선수 등록의 원칙)

- ① 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 또는 승인하는 모든 공식 투어, 대회 및 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장에 따라 매 시즌 선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선수 등록은 협회가 인정하는 프로 선수 자격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1인 1등록(단일 등록제)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협회의 공식 경기 출전, 상금 수령, 랭킹 포인트 부여 및 시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3조(프로 선수 자격 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이 협회의 정규 프로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협회가 주관 또는 승인하는 프로 선수 선발전(프로 테스트)에 합격한 자
 2. 협회의 정관, 경기규정, 윤리규정 및 제반 규정 준수에 동의한 자
 3. 협회가 정한 등록 절차를 완료한 자
- ② 해외 프로파크골프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에서 선수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협회가 주관하는 프로 테스트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국제선수 등록 또는 글로벌 라이선스 시범 운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프로 테스트는 선수의 국적, 연령, 성별 및 기존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선수 등록 절차 및 의무)

- ① 선수 등록은 매 시즌 개막 전 협회가 공지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등록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선수 등록 신청서 및 서약서
 2. 협회 프로선수 등록 인증서(신규 등록 시)
 3. 초상권, 방송 중계권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4. 등록비 및 연회비 납부 증명서
- ③ 협회는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된 선수에게 투어 ID(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제45조(자격의 유지 및 등록 유효기간)

- ① 프로 선수 자격(License)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으로 하고, 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 등록(Registration)의 유효기간은 1시즌(당해 연도)으로 한다.

- ②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다음 시즌 활동을 위하여 재등록(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프로 선수 자격은 휴면 상태로 전환되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 ③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등록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징계 해제 후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6조(등록 제한 및 자격 박탈)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선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 1. 프로 테스트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또는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 2. 승부 조작, 스코어 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 3. 등록비, 연회비 등 협회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 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등록 제한 및 자격 박탈에 관한 세부 절차와 소명 기회 부여는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47조(미등록 및 무자격 선수의 제재)

- ① 미등록 선수는 협회가 주관 또는 승인하는 공식 대회의 본선에 출전할 수 없으며, 랭킹 및 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미등록 상태이거나 자격 정지 중인 자가 신분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경기에 참가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실격 처리되며 향후 협회 주관 대회 출전이 영구 제한될 수 있다.

제48조(국제선수 및 특별 등록)

- ① 협회는 국제 교류 확대, 투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리그 운영을 위하여 해외 프로파크골프 단체 또는 국제 스포츠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선수 등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별지 1 참조)
- ② 국제선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협회와 상호 승인 협약을 체결한 해외 단체의 등록 선수
 - 2. 해외 프로 투어 또는 국제 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자
 - 3. 국제 공동 대회 또는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를 위하여 협회가 초청한 선수
- ③ 국제선수는 협회가 지정한 대회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으며, 해당 대회의 요강에 따라 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④ 국제선수는 협회의 정규 프로 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다.

1. 공식 랭킹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 반영
 2. 차기 시즌 시드 배정
 3. 협회 내부 의결권 및 선거권
- ⑤ 국제선수 등록의 적용 범위, 출전 가능 대회, 포인트 반영 여부 및 유효기간은 해당 시즌 대회 요강 또는 협회 공지에 따른다.

제49조(글로벌 라이선스의 시범 운영)

- ① 협회는 국제 교류 확대 및 글로벌 투어 연계를 위하여 다층적 라이선스 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범 운영 기간은 최초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시범 운영 중인 국제 또는 조건부 라이선스의 권리 범위, 포인트 반영 여부 및 시드 적용 여부는 해당 시즌 대회 요강 또는 협회 공지에 따른다.
- ④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시행지침을 반드시 제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장 선수의 권리와 의무

제50조(선수의 지위)

- ① 본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선수는 협회가 주관 또는 승인하는 공식 투어 및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파크골프 선수의 지위를 가진다.
- ② 선수는 독립된 경기 주체로 활동하며, 협회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 ③ 선수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프로파크골프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가진다.

제51조(선수의 권리)

- ① 등록 선수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가 주관·승인하는 공식 투어, 리그 및 대회에 출전할 권리
 2. 경기 성적에 따른 공식 랭킹 포인트, 상금 및 시상의 대상이 될 권리
 3. 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선수 보호, 복지 프로그램 및 공식 마케팅 지원을 받을 권리
 4. 본인의 경기 기록 및 성과를 개인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권리
- ② 제①항 제4호의 권리는 협회의 중계권, 초상권 및 공식 마케팅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제52조(초상권·중계권 및 마케팅 권리)

- ① 선수는 협회가 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해당 대회의 운영·중계·홍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성명, 초상, 음성, 경기 장면 등에 대한 사용을 협회에 허락한 것으로 본다.

- ② 협회는 선수의 초상 및 경기 장면 등을 대회와 흥행, 방송,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공식 스폰서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선수는 개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대회 기간 중에는 협회의 메인 스폰서 권익을 침해하거나 대회 요강에서 금지한 브랜드 노출 등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선수의 일반적 의무)

- ① 선수는 협회의 정관, 경기규정, 윤리규정, 본 규정 및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선수는 도핑 방지 규정 및 관련 교육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기조작·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도 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선수는 경기위원회, 경기위원 또는 공식 운영요원의 정당한 지시 및 판정에 따라야 하며, 고의적인 경기 지연이나 불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품위 유지 및 스포츠맨십)

- ① 선수는 경기 중은 물론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프로 선수로서의 품위와 스포츠맨십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며 징계 사유가 된다.
 - 1. 폭언, 폭력, 위협, 모욕적 언행 및 비신사적 행위
 - 2. 경기위원회 판정 또는 경기 운영에 대한 공개적 비난 및 비방
 - 3. 갤러리, 스폰서, 미디어 관계자 및 동료 선수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 4. 음주 소란, 도박, 성범죄 기타 법령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55조(대회 참여 및 교육 이수 의무)

- ① 선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배정된 경기 일정 및 대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선수는 협회가 지정한 다음 각 호의 공식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수 없다.
 - 1. 공식 미디어 인터뷰 및 기자회견
 - 2. 개·폐회식 및 공식 시상식
 - 3. 프로암(Pro-Am) 대회, 팬 사인회 등 공식 이벤트
- ③ 선수는 협회가 실시하는 부정방지 교육, 룰(Rule) 교육, 윤리 교육 등 프로 선수로서의 소양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제②항 및 제③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상벌 규정」에 따라 출전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56조(선수의 책임 및 제재)

- ① 선수가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

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출전 정지, 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② 징계의 종류, 양형 기준, 심의 절차 및 이의 제기 절차는 별도로 정한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14장 복장 및 용구 사용 규정

제57조(목적)

본 장은 프로파크골프 선수의 복장 및 용구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기의 공정성·안전성·품위를 확보하고, 프로 스포츠로서의 통일된 이미지와 상업적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복장 규정의 기본 원칙)

- ① 선수는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와 단정함을 유지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복장은 경기력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선수 및 타인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 ③ 협회는 대회 성격, 중계 환경 및 스폰서십 계약 조건에 따라 대회별로 복장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59조(경기 복장의 기준)

- ① 공식 경기 중 선수는 다음 각 호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1. [상의] 칼라(Collar)가 있는 셔츠 또는 협회가 지정·승인한 공식 유니폼
 - 2. [하의] 슬랙스, 반바지 또는 스커트(단정한 스포츠웨어에 한함)
 - 3. [신발] 잔디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또는 파크골프 전용화
 - 4. [모자] 야외 경기 시 선수 보호 및 에티켓 유지를 위하여 모자(Cap, Visor 등)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내 경기, 중계 환경 또는 기상 여건에 따른 예외는 대회 요강으로 정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복장은 착용을 금지한다.
 - 1. 청바지, 트레이닝복, 등산복 등 골프 에티켓에 현저히 벗어나는 복장
 - 2. 반바지나 스커트 없이 레깅스(Leggings)만을 단독으로 착용하는 복장
 - 3. 슬리퍼, 샌들, 하이힐 등 경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신발
 - 4. 과도한 노출이 있거나 혐오·차별·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복장
- ③ 우천·한파·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방풍복, 우의, 방한복 등의 착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회 요강으로 정한다.

제60조(유니폼·비브 및 로고)

- ① 선수는 협회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공식 유니폼 착용을 요구받을 수 있다.

- ② [비브(Bib) 착용 의무] 대회 조직위원회가 선수 식별 및 스폰서 홍보를 위해 비브(등번호 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경우, 선수는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개인 스폰서 로고가 가려진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개인 스폰서 로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1. 협회 및 대회 메인 스폰서의 독점적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2. 대회 요강에서 정한 로고의 부착 위치, 크기 및 개수를 준수할 것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로고 또는 표시는 금지한다.
 - 1. 협회의 공식 스폰서 및 협회에 등록된 용구 업체 이외의 브랜드
(단, 협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용구 브랜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도박, 불법·유해 업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브랜드
 - 3. 정치·종교·차별적 메시지를 포함한 표식
- ⑤ 국제선수의 경우에도 본 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1조(용구 사용의 기본 원칙)

- ① 선수는 협회가 공인한 용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용구에는 클럽, 볼, 티 등 경기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한다.
- ③ 공인 용구의 기준, 공인 절차 및 공인 목록은 협회가 정한 별도의 공인용구 규정(별지 2)에 따른다.

제62조(공인구 사용 의무)

- ① 프로파크골프 공식 대회 및 투어에서는 협회가 공인한 공인구(Official Ball)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공인구의 규격, 재질, 성능 기준, 공인 절차, 유효기간 및 시즌별 사용 정책은 별도의 공인용구 규정(별지 2)으로 정한다.
- ③ 협회는 리그의 표준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즌별로 단일 공인구 제도 또는 복수 공인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플레이어는 경기 중 동일한 색상, 브랜드의 공인구로 예비 볼(2개)를 교체 사용할 수 있다.
- ⑤ 국제선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인구 사용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예외 사항은 국제선수등록 별표 및 대회 요강에 따른다.

제63조(클럽 및 기타 용구)

- ① 클럽은 협회가 정한 규격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개조나 비공인 부착물 장착은 금지한다.
- ② 국제선수의 경우, 경기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한 국제 공인 클럽은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거리 측정기 등 전자 장비의 사용 허용 여부는 대회 요강으로 정하며, 금지된 대회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벌타 또는 실격 처리될 수 있다.

제64조(용구 검사 및 확인)

- ① 경기위원회 또는 경기위원은 경기 전·중·후 언제든지 선수의 복장 및 용구에 대해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정당한 검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경기 출전 제한 또는 실격 처리될 수 있다.
- ③ 검사 결과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용구는 즉시 사용이 중지되며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

제65조(위반 시 조치)

- ① 복장 또는 용구 규정 위반이 경미하거나 경기 시작 전 발견된 경우, 경기위원회는 시정 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또는 비공인 용구를 사용하여 경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해당 라운드 몰수, 실격, 출전 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 및 절차는 「경기 규정」 및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15장 선수 행동 및 윤리강령

제66조(선수의 기본 윤리)

- ① 프로파크골프 선수는 항상 정직, 공정, 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② 선수는 경기 내외를 불문하고 프로선수로서의 품위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선수는 협회, 대회 주최자, 경기위원, 동료 선수 및 관중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언·위협·모욕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

제67조(경기 중 행동 규범)

- ① 선수는 경기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경기위원의 판정에 대한 폭언, 위협, 고의적·반복적 항의
 - 2. 경기 진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3. 타 선수의 플레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행
 - 4.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
- ② 선수는 경기 중 감정 조절과 자기 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든 상황에서 프로다운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8조(비신사적 행위의 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비신사적 행위로 간주한다.
 1. 욕설, 비속어, 모욕적 표현 및 위협적 제스처
 2. 클럽, 볼, 코스 시설물 또는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 규칙 또는 경기위원의 권위를 조롱하거나 경기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
- ② 비신사적 행위는 별도로 정한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된다.

제69조(부정행위 및 이해충돌 금지)

- ①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부 조작, 결과 담합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 금전·향응·이익 제공 또는 수수 행위
 3. 불법 도박 또는 경기 결과와 관련된 사적 거래
 4. 스폰서, 장비, 계약과 관련한 허위·기만 행위
- ② 선수는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대외 활동 및 SNS 윤리)

- ① 선수는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SNS 및 온라인 활동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 대회, 경기위원단, 선수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금지
 2.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 금지
 3. 특정 개인 또는 단체 및 협회에 대한 비방·선동 행위 금지
- ② 온라인상 발언 및 게시물 또한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제71조(징계규정과의 연계)

- ①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종류, 절차, 수위,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징계 규정으로 정한다.

제72조(윤리 교육 의무)

- ① 모든 프로파크골프 선수는 협회가 정하는 윤리·행동강령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윤리 교육 이수 여부는 선수 자격 유지 및 대회 참가 요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5편 경기위원회 및 경기 운영 규정

제16장 경기위원회 운영

제73조(경기위원회의 설치)

- ① 협회는 프로파크골프 대회의 공정한 운영과 경기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기위원회를 둔다.
- ② 경기위원회는 각종 대회에서 경기 운영, 판정, 현장 질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경기위원회는 협회 및 대회 주최자를 대표하여 경기 현장을 총괄한다.

제74조(경기위원회의 구성)

- ① 경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경기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 명
 3. 경기위원 약간 명
- ② 경기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 ③ 경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경기위원의 자격)

- ① 경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파크골프 경기 규칙 및 대회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협회가 실시하는 경기위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3. 공정성·중립성·도덕성을 갖춘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기위원이 될 수 없다.
 1. 징계 중이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인 자
 2. 해당 대회 참가 선수와 이해관계가 명백한 자
 3. 협회의 명예 또는 공정성을 훼손한 전력이 있는 자

제76조(경기위원의 지위와 책임)

- ① 경기위원은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 ② 경기위원은 선수, 지도자, 관계자 및 관중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경기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경기위원의 권한)

- ① 경기위원은 경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경기 규칙 및 대회 운영 규정의 해석과 적용
 - 2. 경기 진행에 필요한 지시 및 시정 요구
 - 3. 경기 질서 유지를 위한 구두 경고 및 현장 조치
 - 4. 경기의 일시 중단, 재개 또는 일정 조정에 관한 결정 등
- ② 제①항의 권한 행사는 경기의 공정성·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범위로 한정한다.

제78조(권한의 한계)

- ① 경기위원은 징계의 종류, 수위, 선수 자격 정지 또는 박탈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징계규정 및 징계기구의 권한에 따른다.
- ③ 경기위원의 현장 조치는 징계에 갈음하는 처벌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보고 의무)

- ① 경기위원은 경기 중 발생한 중대한 분쟁, 질서 위반, 특히 사항에 대하여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기보고서는 판정 검토, 이의 신청 및 징계 절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17장 경기 운영

제80조(현장 운영 기준)

- ① 모든 프로파크골프 대회는 협회가 정한 경기 규칙, 대회 운영 규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② 경기 운영은 공정성, 안전성, 일관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경기위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경기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회별 운영 요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경기 일정 및 진행 관리)

- ① 경기위원은 경기 일정, 조 편성, 출발 시간, 경기 순서 등을 관리·조정할 수 있다.
- ② 기상 악화, 안전 문제,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기위원은 경기의 일시 중단, 연기 또는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조치는 선수 안전과 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2조(현장 질서 유지)

- ① 경기위원은 경기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선수, 경기보조요원, 관계자 및 관중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경기위원의 정당한 현장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한다.
- ③ 경기 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는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본다.

제83조(경기보조요원 관리)

- ① 협회 또는 대회 주최자는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 ② 경기보조요원은 경기위원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경기 진행 보조 및 현장 안내
 - 2. 기록, 계측, 코스 관리 보조
 - 3.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지원
- ③ 경기보조요원은 선수의 경기 결과, 판정 또는 징계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경기보조요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장 판정 및 이의제기

제84조(판정 절차)

- ①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판정은 경기위원이 경기 규칙, 대회 운영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② 판정은 경기의 공정성, 일관성 및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경기위원의 판정은 현장에서는 최종 판정으로 효력을 가진다.
- ④ 판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협회가 정하는 판정 지침에 따른다.

제85조(이의 신청)

- ① 선수는 경기위원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 종료 후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 신청은 대회 운영 요강에서 정한 기한 및 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경기 중 공개적인 항의 또는 판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이의 신청은 판정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6조(재심 절차)

- ① 협회는 적법하게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재심은 경기위원의 판정 기록, 경기보고서, 영상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기초로 수행한다.
- ③ 재심 결과는 협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④ 재심 절차 및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6편 대회 및 프로리그 운영 규정

제19장 프로리그 운영

제87조(리그 구조)

- ① 프로파크골프 리그(이하 “프로리그”라 한다)는 협회가 주관하는 정규 시즌 리그를 기본 구조로 한다.
- ② 프로리그는 단일 리그 또는 복수 대회로 구성될 수 있으며, 대회 수, 개최 지역, 방식은 시즌별 운영 계획에 따라 정한다.
- ③ 프로리그는 개인전, 단체전 또는 혼합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프로리그 구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즌별 대회 운영 요강으로 정한다.

제88조(시즌 운영)

- ① 프로리그는 협회가 정한 시즌 일정에 따라 운영한다.
- ② 시즌에는 정규 대회, 특별 대회, 플레이오프 또는 파이널 대회가 포함될 수 있다.
- ③ 시즌 운영 중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리그 일정 및 운영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시즌 운영의 세부 사항은 매 시즌 개시 전에 공지한다.

제89조(시드 배정)

- ① 협회는 프로선수의 경기력, 랭킹, 전 시즌 성적 등을 고려하여 시드를 배정할 수 있다.
- ② 시드는 출전 자격, 조 편성, 출발 순서 등에 반영될 수 있다.
- ③ 시드 배정 기준과 적용 방식은 시즌별 대회 운영 요강으로 정한다.
- ④ 시드는 선수의 영구적 권리가 아니며, 시즌별로 재산정한다.

제20장 상금 및 포인트

제90조(상금 배분)

- ① 프로리그 및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의 상금은 대회별 상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상금 규모 및 배분 비율은 대회 운영 요강에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상금은 선수 개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세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④ 상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91조(랭킹 포인트)

- ① 협회는 프로선수의 성적 관리를 위하여 랭킹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 ② 랭킹 포인트는 프로리그 성적, 대회 등급,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 ③ 랭킹 포인트는 시드 배정, 시즌 평가 및 공식 랭킹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포인트 산정 방식 및 유효 기간은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21장 스폰서 및 마케팅

제92조(유니폼 및 장비 로고)

- ① 프로선수는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유니폼 및 장비에 스폰서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 ② 로고의 위치, 크기, 수량 등에 관한 기준은 협회가 정한 마케팅 규정에 따른다.
- ③ 협회의 공식 스폰서의 권익을 침해하는 광고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
- ④ 국제 대회 또는 특별 대회의 경우, 별도의 로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3조(광고 및 홍보 기준)

- ① 프로리그와 관련된 모든 광고·홍보 활동은 협회의 승인 또는 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 ② 선수는 개인 스폰서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협회의 명예 및 리그의 공공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회 명칭, 로고, 영상, 기록물 등 리그 관련 지식재산권은 협회에 귀속된다.
- ④ 광고·홍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마케팅 규정으로 정한다.

제7편 상벌 규정

제22장 상벌의 가치와 적용

제94조(상벌의 목적)

이 규정은 징계와 포상의 적절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프로파크골프의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5조(상벌의 가치)

징계는 프로파크골프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포상은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의 사기를 높여 프로파크골프 활성화에 그 가치를 둔다.

제23장 상벌위원회

제96조(설치 및 구성)

- ①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상벌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 여부 및 징계의 종류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97조(회의 및 의결)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 ②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제명 또는 자격 정지 2년 이상의 중징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될 시, 상벌위원장은 전자문서나 팩스 등으로 상벌위원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가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개최 및 의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벌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벌위원장은 차회 상벌위원회에 위 서면 결의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8조(제척)

상벌위원장 및 상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1) 상벌위원장 및 상벌위원이 안건 심의 대상자일 때
- 2) 상벌위원장 및 상벌위원이 안건 심의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 3) 안건 심의 대상자가 공정한 안건 심의에 결격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며 기피 신청을 하거나 기타 상벌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24장 징계 절차 및 조사권

제99조(징계의 대상 및 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본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정관, 제규정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2. 경기 규칙 또는 대회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경기위원의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경우
 4. 경기의 공정성·질서·안전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5. 협회 또는 프로리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경우
- ② 징계 사유의 세부 기준(별표 6 참조)은 본 규정 및 관련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 적용 대상자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협회의 위신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언행을 하거나 기타 징계사유에 근접한 언행을 한 경우, 협회장은 그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의 촉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에 적용될 규정 등)

- ① 징계 사유가 되는 사실(이하 '비위사실' 또는 '비위행위'라고만 함)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행위 시의 법령 등에 의한다. 다만 비위행위 성립 후 법령 및 정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비위행위가 법령 등 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하거나 징계 양정 기준이 감경된 때에는 징계 결정 당시의 변경된 법령 등의 취지에 따른다.

제101조(징계 절차의 개시)

- ① 비위사실을 알게 된 자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소명하여 비위자를 상벌위원회에 징계 제소할 것을 사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제①항의 징계 제소 청구가 있거나 비위사실의 제보를 받거나 기타 경위로 제99조의 대상자의 비위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위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상벌위원회에 징계 제소를 할 수 있다.
- ③ 제99조 제①항에 해당하는 자가 협회나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무고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 ④ 상벌위원장은 비위자 및 비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제소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비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사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무국장은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한 경기위원의 제재가 누락·불충분하거나 경기위원의 제재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징계 제소 없이도 서면 결의로써 경기위원 제재에 추

가하여 징계하거나 경기위원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102조(조사권)

- ① 상벌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대상자 및 비위사실과 관련이 있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경위서, 관련 서류 및 물건(장비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상벌위원회는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현장검증이나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조사는 경기보고서, 판정 기록, 영상 자료,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한다.
- ④ 조사 대상자는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3조(징계 결정 통보 및 절차적 권리 보장)

-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 결정 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 ② 제①항의 징계 사유 통보 및 소명 기회 제공은 상벌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징계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징계 사유 통보 및 진술 기회의 제공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③ 징계대상자가 제②항의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의할 수 있다.
- ④ 징계대상자가 질병, 해외 체류, 구급시설 내의 수용, 그 밖의 사유로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나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하거나, 그러한 자료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104조(징계의 효력 발생)

징계는 통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협회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5조(재심 청구)

- ①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징계 대상자는 상벌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은 새로운 사실, 중대한 절차상 하자 또는 명백한 판단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한다.
- ③ 재심 청구는 징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

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징계 감면 결정을 하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⑤ 징계 기록만으로도 재심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거나, 이사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 결정을 할 수 있다.
- ⑥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 재심 결정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6조(징계의 집행)

- ① 징계 결정은 협회 사무국이 집행한다.
- ② 징계의 결정은 징계 결정 후 집행이 가능한 최단시일에 집행해야 한다.
- ③ 재심청구로 징계 결정은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협회장은 사안이 중하거나 집행을 정지하면 징계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5장 징계의 종류 및 기준

제107조(징계의 종류)

- ① 협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제명: 회원 자격의 박탈
 - 2) 자격 정지 : 일정 기간 선수·관계자 자격 정지
 - 3) 출전 정지: 특정 기간 또는 경기 수만큼 대회 참가 금지
 - 4) 공개 사과 또는 시정 명령
 - 5) 서면 경고: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 촉구
- ② 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 경기규칙, 대회요강 등에 따른 경기위원의 경고 및 실격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와는 독립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08조(징계 기준)

- ① 징계 양정의 기준은 별표 6(유형별 징계 세부 기준)과 같다.
- ② 징계 양정의 기준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109조(징계 양정)

- ①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위반행위의 고의성 및 중과실 여부
 - 2. 위반행위의 반복성

3. 위반행위로 인한 협회·대회의 신뢰 훼손 정도
 4. 반성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5. 사회적 파장
- ② 동일 또는 유사 위반이 2년 이내 재발한 경우 가중할 수 있다.
 - ③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④ 징계는 비위행위에 상응한 제재에 그쳐야 하고, 비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적 요소, 관련자의 반사적 이익·부수적인 불이익, 불공정한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⑧ 감경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⑨ 다수의 비위자의 조직적인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제110조(활동 정지)

- ① 협회장은 승부조작, 경기위원 매수, 마약, 병역비리, 도핑, 강력 범죄, 성폭력, 도박, 음주운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비위 행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협회의 위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단시일 내에 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대상자의 경우,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상자에 대한 활동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활동 정지'란 정관 및 규정에 의한 프로파크골프리그 관련 일체의 활동 금지를 의미한다.
- ③ 상벌위원회의 의견 제출에 관해서는 제97조 제③항을 준용한다.
- ④ 활동 정지의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상벌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 정지의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활동 정지 명령 및 기간 연장 명령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를 준용한다.
- ⑥ 활동 정지 명령의 집행과 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1) 활동 정지 기간 중이거나 기간 만료 후 비위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상벌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다. 활동 정지 기간 중 대상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있는 경우 활동 정지의 효력은 소멸한다.
 - 2) 대상자에 대한 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의 시 활동 정지 명령 집행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3) 활동 정지 기간 중이라도 비위행위의 근거가 없거나 비난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회장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4) 활동 정지 명령은 이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제26장 포상

제111조(포상의 실시)

협회는 본 규정에 따른 징계 외에도, 공로가 현저한 선수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2조(포상 심의)

- ①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와 관련한 포상은 성적에 따라 경기 조직·운영자가 심의·포상한다.
- ② 포상의 종류, 기준 및 절차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 ③ 현장 경기 외의 사유로 인한 포상 심의는 상벌위원회가 심의한다.
- ④ 투표에 의한 포상자 선정은 총다수 득표순에 의한다.
- ⑤ 그 외의 달성 기록 및 별도 지표에 의한 포상은 필요시 협회 사무국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13조(포상의 종류)

-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각종 대회 성적에 따른 상
 - 2) 공로패/감사패: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및 외부 인사
 - 3) 기록 달성에 의한 상: 홀인원 기록, 최다 출전 기록 등
 - 4) 기타
- ② 포상의 대상·기준·내용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편 규정 개정 및 공청회

제27장 규정 개정

제114조(규정 개정 발의)

- ① 본 규정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의할 수 있다.
 1. 협회장
 2. 이사회
 3. 규정위원회
 4.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연서
- ② 규정 개정 발의안에는 개정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시행 시기를 명확히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경미한 문언 수정 또는 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15조(공청회)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개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선수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리그 운영, 징계, 자격 등 핵심 제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 ② 공청회는 선수, 지도자, 경기위원,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③ 공청회 개최 여부, 절차 및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장 공포 및 시행

제116조(규정 공포)

- ① 본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은 협회의 공식 공지 방법을 통하여 공포한다.
- ② 규정 공포 시에는 공포일,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일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117조(시행일의 지정)

- ①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규정의 성격상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포 시 별도의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호,2026.03.06>

제1조(경과 규정)

- ① 본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대회, 리그 또는 징계 절차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② 다만,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호,2026.04.0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프로파크골프 코스 설계 기준 (제9조, 제10조 관련)

구분	항목	기준 (Standard)
코스 규모	총 연장	1,600m 이상 (18홀 기준)
	기준 타수	Par 72 (18홀 기준)
	권장 면적	33,000㎡ 이상
홀 구성	3-3-3 시스템	Par 3, 4, 5 각 3개 홀 배치
홀별 거리	Par 3	60m 이상
	Par 4	80m 이상
	Par 5	110m 이상
설계 제한	금지 사항	교차 홀(Cross), 마주 보는 홀

별표 2. 시설물 규격 기준 (제12조~제14조 관련)

구분	항목	규격 및 기준	비고
티잉 구역	면적	2m × 2m 이상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휠체어 접근 및 스탠스 확보)
	높이	지면으로부터 20cm 이상	낙상 방지 및 안전 강화
	티마크	전면 끝에서 40cm 이상 후방에 설치	또는 티 라인으로 표시
그린	면적	홀 당 100㎡ 이상 (권장)	난이도 조절 및 잔디 보호
	크기	지름 10m 이상	장거리 퍼팅 변별력 확보
	경사도	2% ~ 5%	언듈레이션 부여
홀 컵	지름	200mm	필요시 160mm 인서트 사용
	매설 깊이	지표면보다 10mm 깊게	볼 튀어나옴 방지
깃대(핀)	길이	2.0m 이상 ~ 2.5m 이하	시인성 확보

별표 3. 안전 및 관리 기준 (제11조, 제13조, 제15조 관련)

구분	항목	기준 (Standard)	비고
안전 시설	이격 거리	홀 중심선 간 10m 이상	원칙
	안전장치	-	위험 구간 필수 설치
구역 표시	OB (아웃)	백색 말뚝	코스 경계 등
	OB 존 (안전)	상단 청색 + 백색 말뚝	안전망 구역
	페널티/수리지	적색/황색 또는 청색 말뚝	
잔디 길이 (대회 시)	그린	25mm 이하 (Fast)	천연 또는 인조잔디
	페어웨이	35mm 이상 (Normal)	
	러프	50mm 이상 (Deep Rough)	탈출 난이도 부여

별표 4. 공인 코스 등급 및 요건 (제8조 관련)

등급	명칭	개최 가능 대회	주요 요건
Class A	챔피언 코스	정규 투어, 메이저 대회	모든 설계/시설/미디어 기준 충족
Class B	투어 코스	일반 대회, 드림 투어	기본 설계/시설 기준 충족
Class C	챌린지 코스	아마추어 대회, 예선전	최소 안전 기준 충족
공통	유효 기간	3년	만료 전 재심사 및 갱신 필요

별표 5. 상황별 벌타 적용 기준표(제37~제40조 관련) <개정 2026.04.02>

o 주요 벌타 기준표

구분	위반 상황	벌칙
팅잉 구역	팅잉 구역 밖에서 볼을 놓고 티샷	2벌타
스트로크	밀어내기·퍼 올리기	2벌타
	끌어 당기기	2벌타
볼 관리	마크 없이 볼 이동	2벌타
	오구 플레이	2벌타
분실구	3분 내 미발견	2벌타
OB	OB 발생	2벌타
언플레이어블	언플레이어블 선언	2벌타

수리지·장애물	무벌타 구제 조건 충족	벌타 없음
슬로우 플레이	반복적 지연(Shot-clock 30초 초과)	1차 경고, 2차 2벌타
스코어카드	타수 과소 기재	실격
	타수 과다 기재	제출 점수 인정
비신사 행위	고의 부정·폭언·기물 훼손	실격 또는 징계

o 상황별 벌타 세부 기준표

위반 상황	적용
1. 플레이 시작 전	
가. 티업 이후 도착한 경우	실격
나. 스트레칭 등 몸풀기를 안 한 경우	안전수칙 위반
다. 경기 당일 코스 내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	실격
라. 플레이어가 지참할 용구가 부족한 경우	에티켓 위반
마. 거리 측정기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경우(대회요강에서 승인시)	가능
2. 티잉 구역에서 행위	
가. 플레이 시작 후 동반자에게 조언하는 경우	에티켓 위반
나. 어드레스 시 스탠스가 벗어나더라도 공이 티잉 구역 내 위치한 경우	무벌타
다. 연습 스윙 시 클럽헤드에 공이 맞아 티에서 떨어진 경우	1타 가산
라. 티 위에 공을 놓지 않고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	2벌타
마. 티 샷 시 의도적인 스윙을 하였으나 헛스윙이 된 경우	무벌타
바. 방향을 정하는 표시물을 목표 방향에 놓고 스트로크를 한 경우	2벌타
사. 스트로크를 한 공이 티잉 구역 내에 정지한 경우	1타 가산
아. 공 거치대에 있는 다른 조원의 공으로 스트로크를 한 경우	무벌타
자. 플레이어가 티 샷부터 홀인까지 샷 clock을 30초 초과하여 경기를 지연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2벌타
3. 페어웨이에서 행위	
가. 플레이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 주변을 정리하는 경우	2벌타
나. 플레이어가 공에 접근하면서 고의로 공을 움직인 경우	2벌타
다. 플레이어가 공에 접근하면서 무심결에 공을 밟은 경우	무벌타
라. 목표 방향을 기준으로 공 앞에 클럽헤드가 지면에 닿은 경우	2벌타
마. 깃대에서 먼 순으로 다음 샷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매너위반

바. 플레이어가 동반 플레이어의 공으로 샷을 한 경우	2벌타
사. 충돌로 움직여진 플레이어의 공을 원위치하지 않고 플레이를 한 경우	2벌타
4. 움직이는 공	
가. 스트로크 중 클럽에 공이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2벌타
나. 플레이어의 공이 움직이는 중에 동반자가 샷을 하여 충돌한 경우	2벌타
다. 샷을 한 공이 플레이어 자신의 몸에 맞은 경우	2벌타
라. 샷을 한 공이 동반자의 몸에 맞은 경우	안전수칙 위반
마. 백스윙 도중에 공이 움직여서 스윙을 중지한 경우	무벌타
바.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공이 동반자의 클럽, 발 등에 의해 멈춘 경우	무벌타
사.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공을 동반자가 고의로 공을 멈추게 한 경우	2벌타
5. 마크 행위	
가. 티 샷을 하기 전에 동반자의 공에 대해 마크를 요구한 경우	불가
나. 마크 요구가 없는데 공을 임의로 집어서 이물질 제거한 경우	2벌타
다. 플레이어가 풀에 잠겨있거나 공끼리 붙어 있어 자신의 공인지를 확인하려고 임의로 마크하고 집어 올린 경우	2벌타
라. 20m가 넘는 목표 방향의 동반자 공에 대해 마크를 요구한 경우	요구불가
마. 마크 시 절차를 미준수하거나 유리하게 조치한 경우	2벌타
바. 원래 마크 위치가 아닌, 이동된 지점에서 플레이를 한 경우	2벌타
사. 마크하는 도중 공을 건드린 경우	무벌타
아. 플레이어가 마크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매너위반
6. OB 판정 및 처치	
가. 공이 OB 말뚝 2개 연장선인 경계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	2벌타
나. 공이 OB 말뚝 2개 연장선인 경계선 외측에 걸친 경우	무벌타
다. OB 말뚝 경계선 부근에서 동반자의 판정 없이 플레이를 한 경우	2벌타
라. OB 처치 시 공이 나간 지점이 아니거나 홀 컵에 가깝게 또는 2클럽을 초과한 위치에서 플레이를 한 경우	2벌타
마. 분실구 찾는 시간이 3분 이상 초과하여 플레이를 지연한 행위	2벌타
바. 적색 OB 말뚝이 설치된 홀에서 OB 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	로컬룰(가능)
7. 장애물 주변에서 행위	

가. 공 주변의 낙엽, 비닐봉지 등 이동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무벌타
나. 이동 장애물을 치우다가 공을 건드린 경우	무벌타
다. 나뭇가지, 안전망 등 고정 장애물을 밀치거나 손상하면서 플레이한 경우	2벌타
라. 백스윙 도중에 클럽헤드가 안전망에 접촉한 경우	무벌타
마. 고정 장애물 부근에서 백스윙 없이 밀어내기, 퍼올리기, 끌어당기는 경우	2벌타
바. OB 말뚝 등 고정 장애물을 임시로 제거하고서 플레이 한 경우	2벌타
사. 공이 수리지, 캐주얼 워터, 배수구, 스프링클러, 예비 홀 컵 위에 또는 걸쳐 있는 경우	무벌타
아. 공이 나아갈 목표 방향에 고정 장애물이 있어 구제를 요청한 경우	불가
8. 그린에서 행위	
가. 퍼팅 라이 방향 공 앞쪽 잔디에 클럽을 갖다 대는 경우	2벌타
나. 홀 컵 가까이에 정지하여 동반자 마크 요청에 먼저 홀인을 한 경우	가능
다. 홀 컵 가까이에 있는 공을 홀인을 하지 않고 집어 올린 경우	2벌타
라. 홀인을 하지 않고 다음 홀로 이동하여 경기를 한 경우	실격
마. 공이 홀 컵 가장자리에 걸쳐 있어 10초를 초과하여 기다린 경우	매너위반
9. 벙커에서 행위	
가. 공 주변의 모래를 고르거나 클럽 헤드로 누르는 경우	2벌타
나. 어드레스 시 클럽헤드를 공 뒤쪽 모래에 살짝 닿은 경우	무벌타
다. 백스윙 없이 밀어내거나 퍼올리면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	2벌타
라. 스트로크 이후 모래에 발자국을 고무래로 정리를 안한 경우	매너위반
10. 수리지, 배수구, 워터 해저드에서 행위	
가. 공 또는 스탠스가 걸려 구제를 받을 때 공이 놓인 가까운 쪽 경계에서 2클럽 이내로 홀 컵에서 먼 지점을 선정하지 않고 플레이를 한 경우	2벌타
나. 워터 해저드에 공이 빠져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경우	2벌타
다. 수로에 빠져 움직이는 공을 스트로크 한 경우	2벌타
11. 캐주얼 워터에서 행위	
가. 공 또는 스탠스가 걸려 구제를 받을 때 공이 놓인 가까운 쪽 경계에서 2클럽 이내로 홀 컵에 먼 지점을 선정하지 않고 플레이를 한 경우	2벌타
나. 벙커 내 작은 물웅덩이에 공 또는 스탠스가 걸쳐 벙커 밖으로 공을	2벌타

꺼낸 경우	
12. 공 교체	
가. 플레이 중에 다음 홀에서 공인구인 예비 볼로 티 샷을 하는 경우	무벌타(가능)
나. 플레이 중에 마크하여 집어 올린 공을 공인구인 예비 볼로 교체하여 다음 경기를 하는 경우	무벌타(가능)
다. 공이 손상이 되어 마커에게 통보하고 마크를 한 다음 공인구인 예비 볼로 교체를 하는 경우	무벌타
라. 공이 2개로 분리되어 이전 샷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를 한 경우	무벌타
13. 홀을 잘못 진입	
가. 홀을 잘못 진입하여 다른 홀 티잉 구역에서 오너가 플레이를 한 경우	조원 2벌타
나. 다른 홀로 잘못 진입하여 2개 홀을 플레이 한 경우	조원 4벌타
다. 다른 홀로 잘못 진입하여 후속 조와 순서가 바뀐 경우	무벌타
14. 별도의 표식(OBTI)	
가. 그린 주변 OB 구역에서 공을 놓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근접 지점의 좌 또는 우측에 설치	가능
나. 수로, 워터 해저드 등 주변 좌 또는 우측에 설치	가능

[별표 6] 유형별 징계 세부 기준(제99조, 제108조 관련)

1. 경기관련 위반

위반 상황 및 징계
1. 경미한 경기 규칙 위반
3경기 이내 출전 정지
1경기 출전 정지
경고
2. 고의적 스코어 허위 기재
제명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경기 이상 8경기 이하 출전 정지

3. 부정행위(대리 경기, 용구 규정 위반 등)
제명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4. 경기 중단 및 재개지연 행위
2경기 이상 5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5. 승부조작, 승부조작 공모, 금품 수수
제명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및 출전 정지
6. 불법도박 및 유사행위에 참여·연루
제명
6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출전 정지
7. 경기위원 매수 등 불공정 경기위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
(1) 경기위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에 가담한 경우
제명
3년 이상의 출전 정지, 자격 정지
(2) 경기위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약속, 요구행위
제명
1년 이상의 출전 정지, 자격 정지
(3) 경기 전후 경기위원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
제명
6개월 이상의 출전 정지, 자격 정지
8. 무고·허위사실 제보
제명
1년 이상의 출전 정지, 자격 정지
9. 자수자
징계 감경 또는 면제

2. 경기위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위반 상황 및 징계
1.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경기위원 및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4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2. 사후 경기위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 3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3. 경기위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1) 경기위원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경우 제명 3년 이상의 자격 정지, 출전 정지
(2) 경기위원을 폭행한 경우 10경기 이상 2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3) 경기위원에 대한 협박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4) 경기위원의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2경기 이상의 출전 정지

3. 폭력 및 비신사적 행위

위반 상황 및 징계
1. 선수에게 부상을 입게 하여 치료 기간 중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경우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2. 폭행 또는 폭행 치상 행위 제명 3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 정지
3. 폭언, 모욕 및 비신사적 행위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 5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경고

4. 사적 제재 등 가혹행위
행위 유형에 따라 위 1. 2. 3의 기준을 준용
5. 경기장 시설물, 기물 파손 행위
시설물, 기물 원상 복구 및 변상
6.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
3경기 이상 8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4. 품위 및 윤리 위반

위반 상황 및 징계
1.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강간, 강도 기타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의 특정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명
2.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기타 '성폭력 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명
(2) 그 외의 경우
제명
1년 이상의 자격 정지
20경기 이상의 출전 정지
3.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제명
1년 이상의 자격 정지
20경기 이상의 출전 정지
4. 음주운전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제명

2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제명
10경기 이상 2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5. 경기운영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금전 거래를 하거나 보증을 설 경우
제명
3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6경기 이상의 출전 정지
7. 공정질서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 협회의 위신을 손상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6경기 이상의 출전 정지
8. 불륜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명
1년 이상의 자격 정지
9. 입학(입시)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제명
10. 반도핑(약물검사) 위반행위
반도핑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의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을 적용한다.
11.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
10경기 이상의 출전 정지
12. 협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경우
제명
6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및 출전 정지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5. 협회 권리 침해 및 기타 운영 방해 행위

위반 상황 및 징계
1. 협회 규정, 이사회 결정사항 위반한 경우
제명
3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및 출전 정지
경고
2. 협회 및 대회에 대한 명예실추 행위
(1) 협회, 대회, 경기위원단, 선수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및 행위를 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및 출전 정지
5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경고
(2)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및 출전 정지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경고
(3) 협회에 대한 비방·선동 행위를 주도, 참여한 경우
제명
1년 이상의 자격 정지 및 출전 정지
10경기 이상 2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경고
3. 협회 임원 및 사무국 등 운영 주체에 대해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명
6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및 출전 정지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경고
4. 프로 테스트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또는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프로 테스트 응시 자격 영구 박탈
5. 협회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프로 선수 등록 취소

(2)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미납: 제명

2년 이상 3년 미만 미납: 자격 정지

1년 이상 2년 미만 미납: 경고

[별지 1] 국제선수등록 및 운영 규정 (제48~제49조 관련)

1. 목적

본 별지는 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와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교류 확대 및 대회 흥행을 목적으로, 국제선수 또는 특별 초청선수의 등록·출전 절차 및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선수의 정의 및 구분

- ① “국제선수”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해외 프로파크골프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
 - 2. 협회가 국제 교류 또는 대회 흥행을 위해 초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3. 국내·외 파크골프 발전에 기여도가 있거나 상징성이 있어 협회(이사회)가 추천한 자
- ② 국제선수는 협회의 정규 프로 선수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본 규정에 따른 한시적·대회 한정 자격만을 갖는다.

3. 등록 대상 및 범위

- ① 국제선수등록은 대회별·기간 한정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국제선수는 협회가 지정 및 승인한 특정 대회 또는 투어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 ③ 국제선수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해당 대회의 출전 자격(예선 면제 등 특전 포함 가능)
 - 2. 해당 대회의 성적에 따른 상금 및 부상 수령
- ④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공식 랭킹 포인트의 합산 및 누적
 - 2. 차기 시즌 정규 투어 시드권 배정
(단, 우승자에 한하여 차기 시즌 특정 대회 초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3. 협회 회원으로서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등록 절차

- ① 국제선수등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1.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협회 사무국의 추천
 - 2. 경기위원회 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자격 검토
 - 3. 협회 회장 또는 위임받은 집행부의 최종 승인
- ②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선수등록 신청서
2. 해외 선수 자격 또는 경력 증빙 자료(해당자에 한함)
3. 여권 사본 등 신분 확인 서류
4. 상금 수령을 위한 세무 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5. 초상권·중계권·마케팅 활용 동의서(필수)

5. 등록비 및 비용

- ① 국제선수등록 시 등록비(참가비) 부과 여부 및 금액은 해당 대회 요강 또는 초청 조건에 따른다.
- ② 협회는 필요 시 국제선수의 체류비, 항공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대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6. 복장·장비 및 규정 준수

- ① 국제선수는 협회의 경기규정, 윤리규정 및 제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장비 규정: 경기 용구(클럽, 공, 티 등)는 협회 공인 용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기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한 국제 공인 용구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복장 규정: 복장, 유니폼 및 스폰서 로고 노출 범위는 해당 대회의 요강 및 스폰서십 규정에 따른다.
- ④ 국제선수라 하더라도 경기 중 규정 위반 시, 국내 선수와 동일한 기준의 벌타 및 실격 규정을 적용한다.

7. 프로 테스트와의 관계

- ① 국제선수등록 및 대회 출전은 정규 프로 선수 자격 취득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 ② 국제선수가 향후 협회의 정규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국적과 경력을 불문하고 반드시 협회가 주관하는 프로 선발전(테스트)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국제선수로 출전하여 거둔 성적(우승 포함)은 프로 테스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8. 등록 취소 및 제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국제선수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대회의 출전을 금지할 수 있다.
 1. 허위 경력 기재 또는 서류 위·변조
 2. 경기 질서 문란, 승부 조작, 심판 판정 불복 등 비신사적 행위
 3.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케팅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② 등록 취소 또는 실격 시 해당 선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는 상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된 상금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9. 기타 사항

- ① 본 별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해당 대회 요강 및 이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② 본 별지는 제48조에 따른 국제선수 및 특별 등록에 관하여 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지 2] 프로파크골프 용구 인증 및 등록 규정(제61~제64조 관련) <삭제 2026.04.02>